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74호 2016. 05. 17(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89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9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9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9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90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규칙 폐지규칙 -----	6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제2조제2호 중 “서구”를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50%”를 “50퍼센트”로, “초과될때에는”을 “초과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 중 “서구구정소식”을 “구 구정소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 모집기간중”을 “사람은 모집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될시에는”을 “초과될 시에는”으로, “5%내에서”를 “10퍼센트 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다음 각호의”를 “사람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등록초본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무기간동안”을 “근무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업대학생신청서						
사진부착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연 락 처		
				자택		H·P
세대주와의 관 계				세대주 성 명		
학 교 명				학과 및 학 년		
생활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무주택자 ()					
상기와 같이 부업대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도장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10인이상 13인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를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소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중 “소속직원이 아닌”을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중에서 중기

지방재정업무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위촉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위촉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으로, “주채무를 구가”를 “주 채무를 인천광역시

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지방의회의"를 "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를 "구의회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주채무관계"를 "주채무 관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을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를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변제기간내에"를 "변제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를 "구의회의"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제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①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민”이라 함은”을 “”주민”이란”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같은 조 2항 중 “”동 단위 단체”라 함은”을 “”동 단위 단체”란”으로 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18조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한명이 된 때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서구의회 의원 제외)
2. 구청장이 지명하는 서구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소집
2.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의 작성·관리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 발생 시 제안설명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서구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 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인천광역시 및 서구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 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로 하고, 같은 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위하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서구의”를 “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로 하고, “지속 가

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우리 후손의 인간다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실천추진”을 “실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을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3인”을 “3명”으로, “150인”을 “1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을 “협의회”로, “관련분야 공무원, 학계,기업,구의회 의원,기타”를 “관련 분야 공무원, 학계, 기업, 시·구의회 의원, 그 밖의”로, “자로서 공동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6조 중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의장단의 임기에 준용한다.”를 “의장단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대표는”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제5조 제2항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0조의1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10조의2(중전의 제10조의1)제1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5조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비치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7조 중 “서구의제21”을 “서구의제21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2. 협의회 실천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의1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8조의2(종전의 제18호의1)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할구역내의”를 “관할 구역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수거함의 설치, 유지관리, 수집·운반 등 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운영의 지정 해지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구역 내의”를 “구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각각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의 제10조)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김장철”을 “청라동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며, 청라동에서 사용가능한 전용봉투와 김장철”로, “일정기간을 정하여”를 “사용하는 전용봉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 구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를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구역 내”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설치·운영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 10일 전까지”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을 “해당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제10조제3항 관련)

가. 납부필증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 고
개별용기	3	180	
	5	300	
공동배출 용기	60	3,600	
	120	7,200	

나. 전용봉투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사용가능 구역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	120	청라동
	3	180	
	5	300	
	10	600	
	20 (김장쓰레기 전용)	1,200	서구 지역 (청라동 제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약가) 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7조(수수료 등)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
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 41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3자녀 이상 가족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 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제9조(납부 및 정산)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타수가

종목	기준	수수료	비고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	1치아당	5,000원	건강보험대상 (제1,2대구치) 치아 제외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원	
골밀도검사	허리,고관절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70%,매년 고시가에 따라 변동함	십원단위는 절사
유료접종 (B형간염)	성인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에 500원을 더한 가격	십원단위는 절사
유료검사 (B형간염항체검사)	전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70%,매년 고시가에 따라 변동함	십원단위는 절사

[별표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일반진단서	1통	500원	
2.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	500원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1,500원	
4.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	300원	
5. 외국인유학생결핵검진확인서	“	보건소방문당수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	
6. 결핵고위험국가외국인대상 결핵검진확인서	“	5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7월 5일”을 “6월 8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9월·10월중”을 “9월·10월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27조의 규정에”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제2조제2항 중 “기간중 9일 이내”를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행정사무중”을 “행정사무 중”으로,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등”을 “위원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폐회 또는 휴회중일”을 “폐회 또는 휴회 중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요경비등”을 “소요경비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회 사무직원”을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구 소속 행정기관과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5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를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5조제2항 중 “상호협약하여야”를 “상호협약 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을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의”를 “사람의”로, “출석일등의 3일전”을 “출석일 등의 3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를 “법령 또는 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을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자가”를 “사람이”로, “경우, 같은 항에 따라”를 “경우와”로,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을 “법 제27조에 따라 의장의 통보등”으로, “각항”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
2.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대상현장이나 기타”를 “대상 현장이나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필요로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구 또는 해당기관에”를 “구 또는 해당 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로,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를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구성·운영등”을 “구성·운영 등”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와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8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지급 및 절차등”을 “지급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의회의원이 회기중”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

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원이었던 자의”를 “의원이었던 사람의”로, “있던 자를”을 “있던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2호”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본인 또는 당해”를 “본인 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

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을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망·상해등"을 "사망·상해 등"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과 위원 4인"을 "1명과 위원 4명"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원 중 1명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으로, "의장"을 "의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구소속직원"을 "구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심의회회의 수당등)”을 “(심의회회의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위원회”를 “소속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를 “제1항에 따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제3조제4항 중 “구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구의회의”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고시에는 구의회의”를 “사고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위원간”을 “위원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을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를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료이후 구의회의”를 “만료 이후 의회”로, “구의회에”를 “의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를 “별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 축 장

○ ○ ○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별표]

구 분	액 수
수 당	1일당 10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상의 제1호 라목 상당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9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를 “의회와”로, “규칙에”를 “조례·규칙에”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을 “폐회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위원중”을 “상임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있을때에는 상임위원중”을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9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 (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을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등”을 “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품등”을 각각 “금품 등”
으로 한다.

제12조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대여받아”를 “대여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
여받으려”를 “대여를 받으려”로 한다.

제18조 중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를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받”을 “신고를 받”으로, 같은 항 제3항 및 제4항 중 “제22조”를 각각 “제21조”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금품등”을 각각 “금품 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동강령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동강령운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2. 의회 의원

제22조제5항 본문 중 “연임”을 “한번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새로이 개시된다”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자가 당해”를 “사람이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를 “민간위원이 출석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로 한다.

제29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관리하여야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9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구민 및 단체”를 “인천광역시 서구민 및 단체”로 한다.

제3조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제5조제3호 중 “경우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여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제10조제2항 중 “구분없”을 “구분 없”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90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 과, 소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변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개최시 출석에 대한 일비 등의 지급은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규격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봉투의 제작기준을 준용하고”를 “규격 및 제작사양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외에”를 “제1항 외에”로 한다.

별표2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종류(주 용도)	내부용량 (ℓ)	색상	구 조	비고
단독주택및 소규모 사업장	3	몸체-회색 뚜껑-주황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5			
공동주택용	60	초록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120			

주¹⁾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란 등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19×35.5	22×39.5	26×46.5	33×56.5	42×69.5

※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동)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411 ~ 4)

서구 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 상기 사양은 2ℓ, 3ℓ, 5ℓ, 10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20ℓ)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
(김장쓰레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동 제외)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 (☎560-4411 ~ 4)

서구 시설관리공단 (☎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수료(제8조제3항 관련)

가.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은 조달가+ 판매수수료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나.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가격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 소수점이하 올림

□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조달가(매년 1월 1일 조달청 판매금액)

다.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수료율

구분	규격	판매가격(원)	공급가격(원)	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3ℓ	조례 “별표3”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7			
	5ℓ			7.5			
	60ℓ			7			
	120ℓ			7			
음식물류	2ℓ					7	
	3ℓ					7	
폐기물	5ℓ					7.5	
	전용봉투			10ℓ		8	
20ℓ						7	
전용수거용기	3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5ℓ	10					